

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

1.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
① 계약목적

수급자에게 안정적인 노인장기요양급여서비스(방문요양)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② 계약기간

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. 단 수급자의 요청이 있을 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장기요양 급여 비용, 비급여 사항, 개인정보보호, 계약의 해지, 손해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④ 계약의 해제

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, 시설 전원 등의 계약해제 사유 발생 시 수급자(보호자)는 해당 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계약해지 내용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.

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- 신원인수인은 주민등록증 등으로 수급자의 신원과 건강상태를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.
-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-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-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제공 계약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.
-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.
- 신원인수인은 급여제공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, 월 이용료(본인부담금)를 부담하여야 한다.
-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.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 만일 장기출장 등으로 신원인수인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업무 시 원칙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다. 다만, 수급자의 요청으로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하던 중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원인수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.
- 신원인수인은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(수급자의 사망, 시설입소, 타지역 이사(거주지 변경), 병원 입원, 해외 출국 등)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기관으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.

2.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.

① 월 이용료 :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.

-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
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 등급
재가급여 월 한도액	2,069,900	1,869,600	1,455,800	1,341,800	1,151,600	643,700

- 방문요양 장기요양수가

구분	수 가(단위 : 원/회당)							
방문요양	30분	60분	90분	120분	150분	180분	210분	240분
	16,630	24,120	32,510	41,380	48,250	54,320	60,530	66,770
본인부담금 15% 기준	2,495	3,618	4,877	6,207	7,238	8,148	9,080	10,016

② 본인부담금

- 일반 대상자 :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
- 기초수급 대상자 : 무료
- 의료, 감경대상자 : 6%, 9%

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

-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.
-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.
-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 부담은 기관과 수급자 및 보호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.

3.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

① 장기요양 이용에 따른 서비스 수가는 매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를 원칙으로 하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 후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.

② 수급자 및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수급자의 질병 및 기능상태, 수발환경 변화, 등급변경 등의 사유 등으로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, 기관에 서비스

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기관은 이를 수용하여 서비스 내용을 변경 적용하여야 한다.

③ 다음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 및 비용의 변경계약을 할 수 있다.

-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, 급여내용, 자격기준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
-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-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서비스 내용이 증감되었을 경우(서비스 내용 증감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)
-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